瑞山市揚水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査 報 告 書

1. 審 査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
나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3

라. 上程日字 : 1998. 7. 30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建設課長 尹炳珪)

가. 提案理由

o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양수기 양도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기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o 부·읍면장 및 사무장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관리책임자를 읍·면·동장이 하도록 함(안 제4조).

o 양수기를 대부받아 사용하는 자가 사용후 타인이 필요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읍·면·동장에게 신고후 직접 현장에서 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음(안 제8조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ㅇ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

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,

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 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ρ1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7. 23.

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ρ1

제출년월일 : 1999. 7.ㅋ .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개정이유

○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양수기 양도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기타 현행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부읍·면장 및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었기 양수기 관리책임자는 읍·면·동장이 하도록 함(안 제4조)

○ 양수기를 대부받아 사용후 타인이 필요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 읍·면·동장에게 신고후 직접 현장에서 타 사용자가 사용함으로 신속한 한해대책을 위한 관련조항 완화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근거 :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

○ 입법예고 : 필요없음

○ 서산시규제개혁 위원회

- 기감 05090 ~ 158('99. 2. 2)호

서산시조례 제 호

서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보관관리의 책임) 양수기는 읍·면·동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.

제8조(양도절차) 대부 받은 양수기를 사용후 타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읍·면·동장에게 신고후 양도할수 있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보관관리의 책임) 양수기는 읍·면·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부읍·면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.	제4조(보관관리의 책임) 양수기는 읍·면·동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.
제5조~제7조(생략)	제5조~제7조(생략)
제8조(양도금지)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.	제8조(양도금지) 대부받은 양수기를 사용후 타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읍·면·동장에게 신고후 양도할수 있다.